

#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3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3
4.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4
5.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5
6. 교육기본법 (개정)·····6
7. 지방자치법 (개정)·····6
8. 국민체육진흥법 (개정)·····7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 8**

1. 울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9
2.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10
3.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11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 12**

1. 도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병역신고사항 조례 규정 관련 (전북)···13
2.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경북 경산)···18
3. 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어린이집 운영 위탁 관련 (경기 안성)···22

#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3. 3. 7. 시행 '23. 9. 8.]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수·관리·사용하고 있는 기성·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세입조치 하도록 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일부개정 '23. 9. 12. 시행 '23. 9. 12.]

소관부서 :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032-032-2246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업무와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관련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정 '23. 9. 12. 시행 '23. 10. 19.]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044-201-3838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확산을 도모하고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절차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4 [일부개정 '23. 9. 12. 시행 '23. 9. 22.]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8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25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도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5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3. 9. 12. 시행 `23. 9. 22.]

소관부서 : 국무조정실(청년정책총괄과), 044-200-6326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청년의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253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기준,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및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정,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3. 9. 14. 시행 `23. 9. 14.]

소관부서 :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3. 5. 19. 시행 `23. 8. 20.]

소관부서 :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 국민체육진흥법

8 [일부개정 '23. 9. 14. 시행 '23. 9. 14.]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Ⅱ

#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 울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9. 5.]

###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의에 관한 사항(제2조)
- 나. 매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항(제5조)
- 다.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제6조)
- 라. 관련 사업 수행 기관, 단체 등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 마. 청렴도 평가에 관한 사항(제9조)
- 바.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10조)

2

##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의결일 '23. 9. 1.]

### 제정이유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쌀 가격의 안정 및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

###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제3조)
- 나.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아침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다.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내 대학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7조)

3

###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의결일 '23. 9. 1.]

#### ■ 제정이유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규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 가.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제1조)
- 나.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해촉(제2조~제4조)
- 다.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제5조~제8조)
- 라.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제9조)
- 마.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지원(제10조~제14조)

Ⅲ

##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의견23-0306] 전라북도

### ■ 질의요지 및 의견

#### ○ 질의요지

- 가.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재산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다.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3조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판결 참조).

다만,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례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2항),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는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임명권자 등으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임명 등을 재고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이하 “전라북도조례안”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이하 “병역신고사항”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라북도조례안 제5조제1항제2

호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임명권자 등으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임명 등을 재고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전라북도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이하 “재산신고사항”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라북도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재산신고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라. 질의 그에 대하여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임명권자 등으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임명 등을 재고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전라북도조례안 제13조에서는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위원회”라 한다)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라북도조례안 제13조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사청문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유관기관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관련)

[의견23-0223] 경상북도 경산시

#### ■ 질의요지 및 의견

#####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행동강령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제1호),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의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제2호),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제3호),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위원의 구성(제1호), 위원의 자격(제2호), 위원장 선임방법(제3호), 민간위원의 임기(제4호)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에서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산시의회에 두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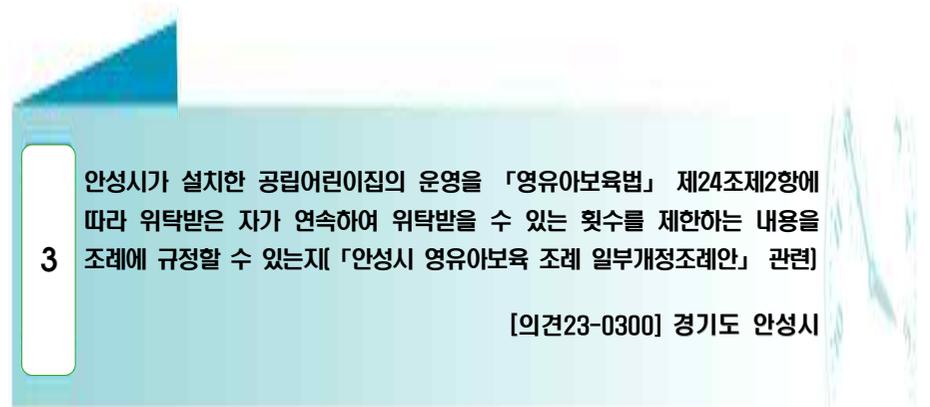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을 해당 자문기관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9. 3. 의견제시 20-0214; 법제처 2017. 9. 6. 의견제시 17-0205; 법제처 2017. 4. 6. 의견제시 17-0080; 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살피건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기관이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기관으로, 각각의 위원회는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3항에서는 조례에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관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관인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 질의요지 및 의견

#### ○ 질의요지

안성시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연속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견

안성시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연속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안성시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연속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8의2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는 신청자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연속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정하는 것은 기존 수탁자가 다시 위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인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의 신청자격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1)부터 4)까지에서는 종전의 위탁운영 횟수로 특정 운영체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제한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점, 같은 규칙 제24조제7항에서는 기존 수탁자가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재위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연속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성시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연속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